



백승호

- 서울 광장국민학교 졸업
- 일본 오키나와 神原中學校 졸업
- 일본 오키나와 小祿高等學校 졸업
- 일본 오키나와 류큐 대학(琉球大學) 法文學部 졸업
- 1990년도 일본 사법시험 합격
- 일본 효고(兵庫)현 변호사회 회장
- 現) 일본변호사연합회(일본련)부회장

### I. 日本 司法試驗에의 도전

1990년 11월 2일 나는 在日 교포로서 28명째의 日本 司法試驗의 합격자가 되었다. 日本에 와서 17년만에 달성한 것인데, 日本말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내가 합격했다는 것은 정말 꿈같은 일이다.

합격 후, 귀국시에 『考試界』의 의뢰를 받아 이 합격기를 쓰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한다.

어떤 내용을 쓸까 고민하던 중 『考試界』의 1991년 1월호에 기재된 李榮眞氏(현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합격기를 읽어 보았다. 그분의 합격기를 읽고 놀란 것은 나와 거의 같은 체험을 했다는 것이다. 日本이나 韓國이나 수험생의 모습은 다름이 없다는 것을 느낀 것이다. 그래서 나의 합격기를 어떻게 쓸까 고민했으나, 여러분도 日本이나 韓國의 수험생의 모습이 다름이 없다는 것을 느껴볼 수 있도록, 솔직한 나의 모습을 그대로 쓰기로 했다.

### II. 동기

나는 1962년 3월에 서울시 광장동에서 출생해서 광장국민학교를 졸업 후, 아버님의 사업관계로 1974년 日本에 있는 沖繩(오키나와)로 이주해 왔다.

沖繩(오키나와)는 日本의 최남단에 위치하고(북위 27°), 연평균 기온이 22°라

는 정말로 더운 곳이다. 日本國에 속하는 현이지만, 日本과는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고(琉球王國이었다), 옛날에는 한국과 직접 무역을 했다는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런 역사적·문화적 사정이 한국이라는 나에게서는 정말로 좋은 사정이었다. 왜냐하면 한국인이라고 차별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런 오키나와(沖繩)에 와서 내가 日本司法試驗에 도전하게 된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었다.

첫째, 6살에 교통사고로 오른팔을 잃어버린 것이다. 몸이 불구가 되어 아버님께서 육체적 일은 못하게 되었으니 머리를 써서 일을 하도록 하라. 그 중에서도 관사가 되라는 말씀을 많이 해주셨다.

내가 나의 몸에 관해 그런 생각을 어렸을 때부터 가진 것은 아니지만, 고등학교에 입학한 후 부터 나의 장래에 관해 생각을 하게 됐을 때, 나 자신도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

둘째로는 日本社會에서 한국인이라는 것이 취직에 큰 장애가 되어 있다는 것이다. 공무원으로 되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사기업에서도 국적에 많은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기능 없이는 채용율이 낮다.

이런 문제 때문에 류큐대학(琉球大學)에 입학 후 사법시험에 도전하게 된 것이다.

### III. 日本의 司法試驗制度

여기서는 日本의 司法試驗制度를 소개해 보겠다.

日本의 사법시험은 1차시험과 2차시험으로 나누어져 있다. 그러나 한국의 사법시험과는 달라 1차시험은 보통대학 2학년의 교양과정을 끝내면 면제를 받는다.

2차시험은 단답식(택일식), 논문식(주관

식), 구술식의 3단계로 나누어져 있다. 그리고, 또 한국과는 달리 단답식에 합격해도 논문식에 떨어지면 다음해에는 다시 단답식부터 보아야 한다.

다만 논문식에 합격하여 구술식에 떨어졌다 하여도 다음 해에 다시 한번 구술식만을 볼 기회가 주어지나, 또 구술식에 떨어지면 다시 처음부터 보아야 한다.

단답식 시험은 매년 5월의 두번째 일요일 오후 2시부터 5시반까지, 憲法, 民法, 刑法의 3과목 각 20문제, 합계 60문제가 출제되어, 약 80%인 48점이 합격라인이 된다. 합격점수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논문식 시험인수가 4,000명 정도이기 때문에, 단답식 합격자를 그 정도로 하기 위해서 합격점수를 조정하고 있는 것 같다. 단답식 시험문제는 공개되지 않지만 수험생들의 기억에 의해 재생되고 있다.

논문식 시험은 매년 7월 중순에 3일 동안에 걸쳐서 단답식 합격자가 보게 되어 있다. 시험 과목은 憲法, 民法, 商法, 刑法이 필수과목이고, 民事訴訟法, 刑事訴訟法 중에 한 과목이 선택 필수과목이다. 그 이외에 民事訴訟法, 刑事訴訟法, 行政法, 破産法, 勞働法, 國制訴訟, 國際私法, 刑事政策 중의 1과목과 行政學, 經濟原論, 財政學, 會計學, 心理學, 經濟政策, 社會政策 중의 1과목을 선택해야 한다.

이 7과목에 관해서 각 2시간씩, 각 과목마다 2문제의 문제에 대해서 필기시험을 본다. 필기 내용은 한국의 합격자 再現答案과 비교해 보면 많은 차이가 난다. 즉, 논문식 시험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은 출제에 관한 수험자의 사고과정이 논리적으로 정리되어 있느냐이다.

이것은 日本의 사법시험법 제5조에 명기되

어 있다. 즉,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의 판정에 편하지 말고 이해력, 추리력, 판단력 등의 판정에 기준을 두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學說의 소개를 하면 안되고 學說의 내용을 자기가 생각해 쓰는 듯 하는 記述이 필요한 것이다.

이 논문식 시험에 합격하면 10월 중순에 실시되는 구술시험에 도전할 수 있게 된다. 시험 과목은 논문식 시험과 같은 과목이고, 하루 1 과목 약 15분에서 20분 정도, 두 시험관(보통 학자와 실무자)앞에서 問答을 하게 된다. 대화가 이루어지면 되는 어려운 시험은 아니지만 자기 기본서 필자와 대화를 한다는 긴장 때문에 정신적으로 힘이 든다.

논문식 시험에 떨어지면 다음 해에 다시 단답식을 보아야 하지만, 불합격자에게 성적표를 교부한다. 각 과목별로 1~1,000번 까지를 A, 1,000~1,500번 까지를 B, 그 후 500명씩 C, D, E, F, G로 표시하며, 또 총합으로 A, B~G로 표시한다. 이런 성적표를 교부하게 된 것은 약 10년전부터이며, 불합격자에게 그 실력을 가르쳐 줌으로써 사법시험 공부를 계속 하느냐에 대해 판단자료로 하라는 것이다.

내가 합격하기 전까지의 성적은 1985년도에 총합 F, 1987년도에 A, 1988년도 A, 1989년도 C이었다. 처음으로 A평가를 받았을 때는 다음 해에는 합격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을 느꼈지만 그 후 3년이 걸린 것이 된다. 참으로 종이 한장 뚫기가 그렇게 어려웠던 것이다.

다음에는 1990년도의 사법시험 응시자와 합격자 수를 소개해 보겠다.

출원자 수는 22,893명, 단답식 합격자 수는 3,814명, 논문식 합격자 수는 506명, 구술식 합격자 수는 499명, 그 중에 여자는 74명이었다. 합격율은 2.18%, 합격 평균연령은 28.65歲이었다. 최저연령자는 21歲, 최고 연령자는

47歲 이었다. 대학별로 보면 東京大 99명(그 중에 재학생 44명), 早稻田大 70명(재학생 7명), 中央大 69명(재학생 1명), 京都大 50명(재학생 31명)의 순이고, 이외의 대학은 10명 내외이다.

여기를 보면 대학 재학생이 많은 것 같기도 하지만, 거의다가 留年生(5학년~8학년)이다. 이것은 사법시험을 포기한 후, 공무원이나 사기업에 취직하려면 재학중이라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이다.

한국의 사법시험과 비교해 보면, 과목수가 적다는 면도 있지만, 합격자 수가 500명 정도이고, 매년 처음부터 보아야 된다는 것이 힘이 든다. 대학을 졸업한 후 5년 정도는 계속해서 공부를 해야지만 합격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젊은 청춘의 부담이 큰 것이다. 이렇게 합격하기 어렵고, 합격자 평균연령이 높다는 것에 대해 최근 日本 内에서 사법시험개혁문제가 일어나고 있다. 특히 檢察官을 희망하는 자가 적다는 것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보통 합격자 중의 3/4이 변호사를 희망하고 있고, 나머지 중에는 裁判官 희망자가 다수이고 檢察官은 보통 30명 정도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합격자 수를 100명 늘리기로 하고, 그래도 평균연령이 내려가지 않으면 회수제한까지도 고려 중인 것 같다.

#### IV. 공부 방법

제가 해 온 공부과정은 수험생의 보편적 방법이었다고 생각한다. 日本의 수험생 모습을 겸해 소개해 보겠다.

류큐대학(琉球大學) 法文學部 法政學科에 입학한 후 대학 2년부터 공부를 시작했다.

앞에서 기술했듯이 대학 2년간의 교양과정을 마치면 1차시험이 면제되기 때문에 3학년

부터 단답식 시험을 볼 수 있다. 처음에는 무엇보다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몰라서, 대학의 憲法會라는 사법시험을 위한 서클에 가입했다. 그 서클에서 구체적으로 합격자의 경험담을 듣고 기본서를 읽기 시작했다.

日本語를 제대로 모르는 상태에서 법률서적을 읽어 나가는 것은 참 힘이 들었다. 책을 읽어도 이해는 못하고, 대학의 강의도 사법시험을 위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불안했다. 그래서 사법시험 豫備校에서 출판하는 참고서와 TAPE(합격자가 강의한 것을 녹음한 것)를 참고로 했다. 日本에는 사법시험을 위한 영리단체가 많이 있다. 그것을 이용하지 않으면 합격할 수 없다고 말할 수 있다. 옛날 같으면 獨學을 해서, 아니면 절에 들어가 공부한 사람도 있다고 들었지만, 지금은 時代가 바뀌어 獨學을 하면 합격 가능성이 없다고 본다. 매년 합격자의 90% 이상이 그 단체를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나도 합격할 때까지 계속해서 이용해 왔다.

시험에 합격하려면 시험 내용에 관한 경향과 대책이 필요하다.

日本の 단답식 시험의 경향은 기본적인 원리 원칙의 이해, 조문, 판례의 이해를 중요시하고 있으며, 짧은 시간에 문장을 읽고 문제점을 이해할 수 있는 독해력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기본서만 읽어도 안 된다. 단답식의 과거 문제를 되풀이해서 풀고, 또 豫備校에서 제공하는 연습문제를 풀어야 한다. 대학 재학중의 공부 양으로는 단답식에 합격할 수 있는 가능성은 적고, 집중적으로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대학졸업 후이어야 합격율이 높다.

나는 대학 졸업 후에 처음으로 단답식에 합격했다. 憲法, 民法, 刑法의 책을 5번 이상 읽고, 조문과 판례를 암기하고, 연습문제를

1,000문 이상 풀었다. 이 단답식 합격은 통과점 밖에 안되고 큰 장해는 논문식이기 때문이다. 처음으로 도전한 논문식은 말도 안 될 상태이었다. 겨우 3과목에 관한 지식으로 7과목의 논문을 작성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러나 단답식에 합격했다는 것이 큰 자신이 되었다. 그 후 부터는 논문식을 의식하여 7과목 전부에 관한 책을 읽기 시작했다. 책을 읽으면서 연습문제를 풀어 나갔다.

다음 해에는 논문식을 너무 의식한 것과 단답식에 과신이 되어서 그 시험에 떨어졌다. 그 불합격에 큰 쇼크를 받고 수험을 간단히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다짐을 하였다.

단답식에 떨어지면 1년이 길다. 다음 해까지 꼭 1년이 남아 있으나 1년 내내 공부만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 쇼크에서 다시 일어나 8월부터 공부를 시작하여 작년에 최종합격 할 때까지 4번 계속해서 단답식에 합격했다.

대학 재학중에는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졸업 후에는 어느 변호사가 제공하는 연구실에서 다른 수험생과 같이 공부를 하였다. 거기서 3년간 공부를 한 뒤, 나이도 들고, 아버님이 돌아가신 후 어머니만 일을 하셨기 때문에 경제적 문제도 있어서 대학 선배 변호사님의 사무소에 취직하게 되었다. 취직했다 해도 사정을 이해해 주셔서 공부만 하면 된다고 하시면서 일을 시키시는 적은 없었다. 다만 논문식이 끝나면 발표까지 두 달을 지내야 하기 때문에 그 동안만 조금씩 일을 도와드렸다. 합격한 지금 어떻게 감사해야 좋을지 모르겠다.

## V. 在日韓國人과 日本司法試驗

한국국적을 가지고 사법시험에 합격한 수는 1990년대 합격자 6명을 포함해서 33명이 된

다. 그 중에 약 15명이 東經과 大坂에서 변호사 활동을 하시고 있다.

이렇게 한국국적을 유지하면서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변호사 활동을 하게 된 것은 오래된 일이 아니다.

1976년도에 합격하신 김경득 변호사님의 크셨다. 그 내용을 설명하자면, 일본 사법시험에는 日本국적이 수험자격으로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한국국적을 가지고 수험에 합격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사법연수원에 입소하려면 국적요건이 필요한 것이다. 왜냐하면 사법연수생의 직분이 準공무원이고 공무원이 될려면 日本국적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김 변호사님께서 문제제기를 하시기 전에는 한국국적을 가지고 합격한 사람은 모두 日本國으로 歸化를 한 뒤에 사법연수원에 입소했다고 한다. 그런 상황 가운데 김 변호사님이 연구소에 입소하기 위한 歸化를 거부하신 것이다. 그리고 한국국적을 유지하시면서 연구소에 입소하겠다고 문제를 제기하신 것이다.

그 이유는 물론 연구소 졸업 후 判事나 檢事가 될려면 日本국적이 필요하다. 그러나 辯護士는 자유업이기 때문에 국적이 필요하지는 않는데, 辯護士가 되기 위한 전제조건인 연구소에 입소하기 위해 국적을 필요로 한다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었다.

그 후부터 한국국적으로 합격한 후 사법연구소에 입소, 졸업한 한국인 변호사님들이 日本 각지에서 辯護士 활동을 하고 계시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에는 또 하나 문제가 있었다. 그것은 외국국적을 가진 합격자가 사법연구소에 입소하려면 다른 日本국적의 합격자와는 달리 서약서와 보증인을 요구받았던 것이다 (日本人 합격자중에도 과거에 刑事罰을 받았던 사람은 같은 취급을 받았다).

그러나 이 문제도 현재 연수중인 한국인 연수생과 인권감상 좋은 日本人 연구생이 철폐 운동을 하여 1991년에 입소예정 합격자에게는 그런 특별한 수속을 요구하지 않게 되었다.

이런 경과를 걸쳐 日本 사법시험과 연수문제는 외국인 특별히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日本人과 다른 대우를 받지 않게 되었는데 이는 문제의식을 가진 선배님들의 노력 없이는 해결되지 않는 결과이므로 참으로 감사를 드린다.

## VI. 지금부터의 길

사법시험의 합격이라는 것이 지금부터의 나의 인생에 큰 분기점이라고 생각된다.

수험생이었을 때에는 무조건 합격만하면 된다는 마음으로 합격을 나의 큰 목표로 삼고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노력했지만 지금 생각하면 합격은 하나의 통과점에 지나지 않는다. 나의 큰 目標는 나에게 주어진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여 먼 훗날 지내온 人生길을 뒤돌아 볼 때 생명을 허락하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4월부터 2년간 사법연수원에 들어가 실무공부를 하여 歸化를 하지 않는한 辯護士로서의 직분을 가지고 日本에서 正義를 이룩하도록 노력하겠다.

마지막으로 몇 년 만에 한글로 글을 쓰는지 모를 정도로 오래간 만에 글을 썼기 때문에 글이 맞았는지 모르겠지만 열심히 썼으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

여러분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지지말고 반드시 합격한다는 신념을 갖고 노력하시어 1년이라도 빨리 합격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1991년 3월  
오끼나와에서 백승호